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6. 28, 허종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7.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9.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1차 중소기업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 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 상정 · 소위심

사보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허종식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 이 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 실시의 실효성을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의 주기 등을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을 근거로 중소기업 실태조사 시행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 중 이 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제1호)를 제외한 여성기업 실태조사(제2호),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제3호), 소상공인 실태조사(제4호)에 관하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개별근거법률에서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 시행 주기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u>하여야 한다.</u>	제7조(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① ----- ----- ----- ----- ----- ----- <u>매년 정</u> <u>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u> <u>공표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u>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결과</u> <u>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